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신청지역 전국 확대〉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32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동만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4.
3. 회부연월일 : 2024. 9.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종전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22.7.11.)하였으나,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한 불편이 존재함에 따라, 중증장애인도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뿐만 아니라 신규 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27조의2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함)이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전국 어디서나 해당 중증장애인, 법정대리인 등의 신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체적·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으로서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증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중증장애인을 직접 방문하게 하여 주민등록증을 <u>발급·재발급</u> (발급의 경우는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중증장애인에 한정한다)할 수 있다.	제27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 ----- ----- ----- ----- ----- ----- ----- ----- ----- ----- <u>발급·재발급</u> - ----- ----- -----.

현행	개정안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이 직접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중증장애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발급의 경우에는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중증장애인에 한정하고 있음²⁾.

이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증장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지에 방문신청을 해야 하며, 주민등록지의 공무원이 중증장애인의 실제 거주지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1)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의2(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재발급)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2. 중증장애인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
3. 이장(중증장애인이 혼자 거주하거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 등 발급·재발급 신청을 대신할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27조의2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이하 이 조에서 “방문 발급·재발급”이라 한다)해 줄 것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2.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중증장애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외의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그 중증장애인의 신청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 발급·재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 발급·재발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방문일자 및 방문자 등의 사항을 함께 통보하되, 방문일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2) 舊 「주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주민등록지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방문 발급도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음.

증을 발급하여야 함.

예를 들어, ○○시에 주민등록이 된 중증장애인이 □□시에 거주하는 경우 □□시에 방문신청을 할 수 없고, ○○시에 방문신청을 하면 ○○시의 관계 공무원이 □□시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

한편, 주민등록증 발급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2022년 7월 현행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취지>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수령 허용

○ 개정 필요성

- 주민등록증 재발급과 달리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은 거주지 시·군·구에서만 신청할 수 있어 생활권과 주거지가 다른 주민 불편 초래
 - ※ 특히, 신규발급 대상자인 만 17세 고등학생의 주소지와 학교의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학교 근처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어려움

○ 개정내용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허용(영 제36조제3항)
 - ※ 거주지 시·군·구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지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 부담

현행	개정안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u>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군·구”라 한다)</u> 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u>시·군·자치구의 관계 공무원에게</u>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지문을 찍어 신청해야 한다.(이하 생략)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이 전국 어느 시·군·구에 대해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등록발급 신청이 지체되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방지³⁾하며, 주민등록지의 공무원의 출장 등에 따른 행정비용을 경감시키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했던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방문신청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4

3) 참고로, 17세 이상인 자가 주민등록증 신청기한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발급신청할 것을 최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④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나이가 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 및 해외체류자는 제외한다)에게 발급신청을 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제40조(과태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